

어린이용 식사: 식품 서비스 업체 유의사항

뉴욕시 위원회에서는 식품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메뉴 또는 메뉴판에 어린이용 식사의 일부로 기재할 수 있는 음료를 제한하는 2019 지방법 75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요건과 준수 요령에 관한 정보가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법 75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메뉴 또는 메뉴판에 어린이용 식사를 게시하고 음식의 일부로 음료를 제공하는 식품 서비스 제공 장소라면 어디든 본 지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식사란 무엇입니까?

어린이용 식사란 어린이용으로 만든 식품이나 식품의 조합으로 메뉴 또는 메뉴판에 아래 항목과 함께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child(아동),” “kids(어린이),” “junior(미성년자),” “little(꼬마),” “kiddie(아이),” “kiddo(자녀),” “tyke(꼬맹이)”, 또는 유사한 단어
- 만화나 퍼즐, 게임
- 음식과 함께 장난감이나 어린이용 게임을 준다는 내용
- 해당 식사의 연령 상한선

이제 지방법 75가 시행 중이니 어린이용 식사에 제공될 수 있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법이 발효되면서 식품 서비스 제공 장소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용량의 해당 음료만 어린이용 식사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천연 또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지 않은 물, 탄산수 또는 가향수.
- 8온스 이하의 무지방 또는 1% 저지방 가미유 또는 비가미유
- 8온스 이하의 유제품이 아닌 가향 또는 비가향의 아니되 영양학적으로 유제품 우유와 동등한 음료.
- 8온스 이하의 천연 또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100% 과일 또는 채소 주스(또는 주스의 조합). 주스는 물 또는 탄산수를 함유하여도 됨.

유제품 우유와 영양학적으로 동등한 유제품이 아닌 음료란 무엇입니까?

유제품이 아닌 음료가 유제품 우유와 영양학적으로 동등하려면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에서 정한 영양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제품이 아닌 음료 한 컵(액체 8온스)에는 최소한 영양소가 다음과 같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 칼슘 276밀리그램(mg)
- 단백질 8그램(g)
- 비타민 A 500 국제단위(IU)
- 비타민 D 100IU
- 마그네슘 24mg
- 인 222mg

- 칼륨 349mg
- 리보플라빈 0.44mg

- 비타민 B12 1.1마이크로그램 (mcg)

고객이 요청한 경우 식품 서비스 제공 업체는 다른 음료를 제공해도 됩니까?

예. 고객이 다른 음료나 크기를 요청하면 식품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를 제공하여도 됩니다.

식품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부는 해당 법을 지키지 않는 식품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과태료와 함께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고 \$200입니다.

본 요건 위반이 업소의 위생등급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해당 법의 위반은 업소의 위생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46-632-6001**번 또는 **infobfscs@health.nyc.gov**를 통해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식품 안전실에 문의하십시오. 상기 정보를 다른 언어로 보시려면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children's meals"**(어린이용 식사)를 검색하십시오.